

地域醫療保險料 賦課體系의 改善方案

魯 仁 喆*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I. 序 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12년이라는 최단기에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의 안정적인 정착일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보험재정

의 안정이라는 측면이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계속 증가하는 의료비의 지출에 대한 재정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의료보험은 시행기간이 짧은 뿐 아니라 농어민, 영세상인 등을 주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막대한 규모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의 전망은 밝지 않다. 지역의료보험의 1990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지역보험은 420억원

*본원 종합분석실장

본고를 작성하는데 유익한 조언과 전산처리에 많은 도움을 준 이종협 박사(덕성여대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본고를 자세히 읽고 유익한 지적을 해준 김수춘 연구위원, 박경숙 박사에게 감사한다. 또한 본고의 내용은 오직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따라서 모든 오류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의 당기적자를, 도시지역은 25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¹⁾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 이슈, 즉 보험료부과체계, 국고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그리고 보험재정누수 등에 관한 체계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²⁾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험료부과체계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의료보험의 주적용대상자인 자영업인의 소득은 그 구조상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 또는 신고에 의해 파악된 자료도 실제 소득수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층간 공평부과 및 재원확보 등 보험료부과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같이 소득비례보험료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며 실제 소득과 약의 애로점이 보험료의 공평부과 및 보험재정의 안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부과방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과자료의 부족과 보험료부과방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등 보험료의 인상 및 징수율의 제고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조사에서 가장 큰 불만은 보험료산출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 특히 소득비례보험료에 대한 산정이 큰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현행 보험료부과방식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비용부담의 공평성과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保險料賦課體系의 現況 및 問題點

지역의료보험은 주어진 여건에서 조합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보험료에 대한 주된 불만요인 중의 하나는 상대적 불공평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소득비례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의 부과방식과 부과자료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³⁾

2.1 賦課方式 및 賦課資料

현재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는 소득이나 자산 등의 부담능력에 착안하여 능력비례보험료와 세대당 및 피보험자 1인당으로 산정하는 기본보험료의 합산에 의해서 부과된다.

Table II-1. Method of Computing Contribution
보험료부과 방식

		Calculation	Source
Ability-related component			
income	lump-sum by grade	tax record-global income	report -other income
property	lump-sum by grade	tax record-land, house	report -rent
other asset	lump-sum by grade	tax record-automobile	
Basic component			
per household	lump-sum		
per person	lump-sum		

- 1) 1991년 정기국회에서 1,009억원의 국고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도록 의결했다. 따라서 지역조합에 추가지원금이 배정됨에 따라 과거 누적적자는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 2)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현황, 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및 보험재정 누수의 억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노인철외(1991)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 3) 현행 보험료체계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노인철외(1991),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부과대상으로 상공자영인의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사업소득의 격차가 심한 편이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세무서의 소득세 결정유형은 기장을 하는 경우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상공인의 자영업자중 일부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므로 그것을 통해 소득금액이 산출된다. 반면 기장을 안 하는 자영업자는 신고한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 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된다. 이때 지역의료보험의 적용대상자중 대다수가 과세특례자이거나 혹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소득이 노출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자영인의 소득원은 농업소득, 겸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이며, 농업소득은 경지규모와 비례하고 농업외소득은 겸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지소득은 내무부 지방행정기관에서 농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있는데 농업자영자의 대부분이 면세대상이어서 농지소득추계를 위한 자료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역조합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는 크게 세무자료와 자진 신고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 세무자료는 주로 종합소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무자료세대에 대해서는 신고소득이나 전·월세 등의 자진신고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세무자료 또는 신고자료가 없는 세대의 경우에는 조합의 필요에 따라 업종별 등급에 관한 자료, 세대당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한 소득추정자료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원에서 조합실무자회의를 통해 수집한 농촌지역의 26개 군조합과 도시지역의 25개 시조합의 보험료부과자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부과근거 자료가 있는 세무 소득자료는 군조합의 종합소득 10%, 농지소득 47%, 시조합의 종합소

Table II-2. Utilization of Tax Records, 1990
보험료부과자료의 활용률

(Unit : %)

	Income		Property	
	county	city	county	city
Tax record ¹⁾	57.2	14.3	57.0	31.9
global income	10.1	13.7		
farm-land income	47.1	0.6		
Reported income	1.7	67.5		9.2

Note : 1) Automobile and other asset are not included.

Source : I. Noh, *A Study on Financing Stab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1991, P. 114.

득 14%를 점하고 있는데, 시조합은 면세점미만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자료파악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조합은 주민들의 신고소득 또는 조합의 추정자료 이용률이 67.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산에 관한 자료는 군조합이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조합의 재산자료 이용률은 전·월세 추정자료까지 포함하면 41%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자료생산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농지소득은 지방행정기관에서 산출되고 있는데 면세점미만의 세대에 대한 농지소득의 추계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지소득산출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농지소득의 면세점이 인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세대가 면세점미만에 포함되고 있어서 농지소득자료상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시조합의 경우는 소득자료가 전혀 없는 세대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소득 또는 조합측의 추정자료 등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삼척시조합의 경우 3,637세대 중에서 951세대가 세무자료에 나타난 종합소득에 소득비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총세대의 51.4%인 1,869세대는 신고소득 또는 조합에서 추정한 소득등급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무신고 817세대 대해서는

Table II-3. Amount and Distribution of Contribution by source(Samchuck city)
소득자료유형별 보험료부과 구성비(삼척시조합)

(Unit : 1,000 won, %)

	Household	Basic Component	Income		Property	Other asset	Contribution
			global	other			
Total	3,637 (100)	25,311.6 (100)	5,349.7 (100)	4,599.6 (100)	8,841.9 (100)	1,407.6 (100)	45,510.4 (100)
Global income	951 (26.1)	7,413.3 (29.3)	5,349.7 (100)	164.1 (3.6)	4,278.5 (48.4)	897.9 (63.8)	18,103.5 (39.8)
Reported	1,869 (51.4)	11,983.2 (47.3)		4,435.5 (95.5)	881.0 (10.0)	198.8 (14.1)	17,498.5 (38.4)
Unreported	817 (22.5)	5,915.1 (23.4)			3,682.4 (41.6)	310.9 (22.1)	9,908.4 (21.8)

Note : The data is as of June 1991.

Source : Samchuck Ci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소득비례보험료를 전혀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무신고 817세대가 재산비례보험료의 비중이 41.6%로 신고소득 1,869세대의 10%보다 훨씬 높아서 무신고 817세대의 재산등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기타자산 보험료의 비중도 무신고 817세대가 22.1%로 신고소득 1,869세대에 비해 더 많은 세대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표 II-3>에서 시사해 주는 것은 세무자료에 의한 소득과 신고소득이 없는 세대 중에서도 재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고소득이나 조합직원의 추정에 의한 기타소득부과는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2.2 賦課資料 및 賦課方式의 問題點

자영인의 소득은 대체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 또는 신고에 의해 파악된 자료도 실제소득보다 지나치게 낮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층간 공평부과 및 재원확보 등 보험료부과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같이 소득비례 보험료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며, 실제 소득과약에 따르는 애로점이 보험료의 공평부과

및 보험재정의 안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소득에 관한 세무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해 신고소득이나 조합측의 추정소득 등급에 부과하고 있는 기타소득 보험료의 문제점은 무신고소득 세대가 재산이나 자동차 소유에서 신고소득 세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세무자료는 없으면서 재산비례보험료를 많이 내는 세대의 경우 신고나 추정에 의한 기타소득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신고 세대에 대해 소득비례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조사(김수춘 외, 199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장 큰 불만은 보험료계산방식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 소득비례 보험료에 대한 산정이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표 II-4>와 <표 II-5> 참조).

다음은 부과방식의 문제점으로서 능력비례 보험료가 요소별로 등급을 책정하여 부과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첫째, 등급별 보험료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공평부담이 저해되고 있음

Table II-4. Distribution of Dissatisfying Factors on Regional Medical Insurance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요소

	Contribution ¹⁾	Benefit ²⁾	Limit ³⁾	Cost-sharing	choice of facility	Under-supplied	Waiting time	Administration ⁴⁾	Other
Total ⁵⁾	46.5	44.2	13.7	15.1	41.7	14.5	16.0	6.9	1.4
County	44.4	36.3	13.9	10.8	50.5	23.7	13.6	5.8	1.0
City	48.4	51.0	13.5	18.8	34.0	6.5	18.2	7.9	1.8

Notes : 1) Contribution refers to a calculating method.
2) Benefit refers to medical services excluded from the current benefits.
3) Benefits are limited up to 180 days per year.
4) Regional society is not administrated both efficiently and democratically.
5) Total percentage amounts to 200% by choosing 2 factors.

Source : S. Kim, *An Evaluation Survey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1, P. 73.

Table II-5. Distribution of Dissatisfying Factors on Financing Method
보험료부과방식에 대한 불만요소

	No. of household	Farm-land	House Income	Farm-land & Farm-land income
Total	17.0	14.5	15.7	37.9
County	11.2	23.5	10.6	22.4
City	21.2	7.8	19.5	49.4

Source : S. Kim, *An Evaluation Survey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1, P. 46.

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재산비례보험료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표 II-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정률방식으로 부과하는 경우의 정률은 재산비례보험료 부과총액을 재산가액으로 나누면 0.061499%로 산출된다. 정률에 의한 보험료부과와 등급별 정액에 의한 보험료수준을 비교해 보면 등급이 낮을수록 정률부담에 비해 등급별 정액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부담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와 역진적인 비용부담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률부과는 상위등급의 상한제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별 정액부담보

Table II-6. Comparison of Property-related Contributions(Samchuck city)
재산비례보험료의 비교(삼척시조합)

Grade	Lump-sum(A)	Flat rate(B) ¹⁾	A / B
1	1,000	497	2.01
5	2,100	1,282	1.64
10	3,200	2,010	1.59
15	4,800	3,136	1.53
20	7,500	4,942	1.52
25	11,100	7,631	1.42
29	15,700	11,011	1.42
30	16,900	35,290(67) ¹⁾	0.48

Notes : 1) Official value of property is multiplied by 0.061499%.
2) refers to numbers of household.
The data is as of June 1991.

다는 훨씬 공평한 부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책정된 등급에 대한 주민의 불만 뿐 아니라 지역조합간 등급순위의 상대적 차이로 인해 조합간 이동시 등급순위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크다고 보여진다. 셋째, 등급별로 정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없이도 보험료의 자동 수입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 종합소득은 매년 6월이 되어야 확정되고, 농지소득은 수매가가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되어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원별로 확정시기가 달라서 등급조정 의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과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보험료산출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에 대한 문제제기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기본보험료 중에서 적용세대의 가족 1인당 정액 부과는 수익자부담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된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의 이용확률 혹은 위험비례를 반영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를 부과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세대부과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정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또는 소득자료의 태부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적용세대에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한달선, 1988), 그러나 이 방식은 기본보험료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조합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비용부담의 공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또한 보험재정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 소득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保險料賦課體系 改善의 基本方向

3.1 基本原則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비용부담을 모두 해야한다면 계약에 따른 민간보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

보험도 보험의 원리상 이익원칙(benefit principle)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수입과 보험급여액이 동액으로 되는 보험수리상의 균형 내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⁴⁾

사회보험은 수익자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소득이전은 같은 집단간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는 하되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본다. 즉 보험료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와 같은 것이며 가입집단에 따라 기업부담과 국고보조에 의해서 사회보험의 재원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험자가 정부이고 행정상의 소요경비를 국고로 부담하거나 또한 기업이 부담한다 해도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의 장치에 불과하거나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로의 이전 혹은 세대간의 재분배장치에 지나지 않는다.⁵⁾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는 비용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비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험비례부담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가미해야 한다. 또한 부과방식의 단순화를 통해서 공평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보험료 분석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세대당 정액부과를 피보험자당으로 단일화하여 이를 위험비례 보험료로 한다. 둘째, 능력비례 보험료는 등급별 정액부과를 지양하고 정률방식으로 전환하여 등급 차이에 의한 불만을 해소하고 보험료부과에 관련된 업무를 대폭 줄이도록 한다. 한편 소득금액이나 또는 재산가액의 상한(ceiling)을 정해 놓고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상한은 2단계 또는 3단계로 차등할 수 있으며 매년 신축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한다.

4) 보험원리에 따른 사회보험으로는 소득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소득은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공적 부조를 통해 보장해주고 있다.

5) 사회보장방식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미약하다는 사실이 국제간 여러 연구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3.2 能力比例 賦課方式의 基本를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공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득의 직접추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세대주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월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소득자의 세무자료에 나타난 소득금액은 70만원일수도 있고 30만원이거나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구조상 자연인의 소득은 본인의 사실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실제로 밝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사실대로 밝혀지든 혹은 밝혀지지 않든 간에 소득전액이 처분되는 것은 자명하다.

소득은 처분과정에서 대부분 소비되거나 또는 저축된다. 저축은 다시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의 구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의한 순부(net wealth)의 증가로 나타난다. 먼저 저축 중에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제의 미실시로 인해 자료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실명구좌라 하더라도 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이 자료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실물자산의 경우 토지자료는 종합토지세제의 실시로 가족명이나 지역으로 분산된 토지의 종합화가 가능하다.⁶⁾ 그리하여 자료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자료접근이 용이하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역간 과표의 현실화에 있다고 본다. 그 반면에 건물은 종합건물세제의 미실시로 건물소유주별로 종합화가 가능하지 않으나 6대 도시와 경기도 일원의 경우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대별 마스터파일의 완료되어서 이지역에 대한 주택건물의 종합화는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부문에서의 보험료부과 대상을 정리해 보면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들 수 있다. 토

지와 건물의 재산은 자료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부과의 공평성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나 금융자산의 경우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비란 주로 가계부문에서 경제주체들이 단용소비재(식료품, 의류), 내구소비재(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여러가지 서비스(교육, 의료, 여행) 등이 제공하는 효용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소득수준과 소비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소비지출은 소득에 대한 지출 가운데 가장 큰(80%를 전후한 수준) 항목이라는 점이다. 또한 소비는 가장 큰 항목일 뿐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항목이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수준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는 없으며 대체로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반면에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다 하여도 소비수준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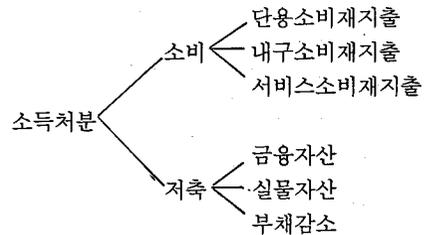


Figure III-1. Flow of Disposal Income
소득처분의 흐름

이와 같이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가계의 소득 및 부의 축적, 앞으로의 소득에 대한 전망, 정부정책, 기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요인은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품목 중에서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을

6) 종합토지에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보건사회부가 내무부 또는 건설부와의 행정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전산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품목(item)을 밝혀내 부과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소비수준 혹은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의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 품목이 주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 품목은 자료접근의 용이성(low cost) 즉,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용이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커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품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

앞에서 논의된 조건들을 충족해주는 품목으로는 전력요금, 전화요금, 가스사용료, 수도요금,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움 및 오피스텔 소유권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전화요금, 가스사용료, 수도요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자동차와 골프, 콘도, 오피스텔 등의 회원권은 일부 부유층의 생활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표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품목은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보험료부과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자동차는 현재 부과대상이 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 등은 앞으로 부과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 중에서 전력요금이 지표개발의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시할 능력비례보험료의 부과대상은 소득, 재산, 기타자산 등으로 한다. 특히 소득비례보험료는 세무자료에 의한 종합소득과 소득의 세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부과근거의 객관성은 물론 부과의 공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골프, 콘도미니움 및 오피스텔 회원권 등을 포함하여

Table III-1. Method of Computing Ability-related Contributions
능력비례보험료의 부과방식

	Calculation	Source
Income		
global income	flat rate	tax record
electric power rate	flat rate	official data
Property		
official value	flat rate	tax record
Other asset		
automobile	flat rate	tax record
membership of golf, condominium, etc.		

노출되지 않은 소득수준을 반영시킨다. 앞으로 개선될 능력비례보험료 부과방식의 기본틀은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3.3 電力料金の 妥當性 및 根據

여기서는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보험료부과 지표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전력요금 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현대 소비생활에서 전력소비수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형광등, TV, 선풍기, 전기밥솥 등 기본생활을 위한 전력수요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요청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션 및 전기요리기 등 문화생활의 전력수요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소비지출의 증가율은 GNP증가율과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전력소비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의한 고급내구소비재 사용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소득계층간 고급 내구소비재 사용이 일반화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여 가정용 전력소비지출이 비례하여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소득수준과 전력소비지출이 어느 정도 관

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의 추정치는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시계열의 분기별자료(1981-1990)에 의한 농가가구의 월수입과 월광열비와의 상관계수는 0.987로 나타나 두 변수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암시해 준다. 도시근로자가구와 서울근로자가구로 구분하여 추정해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상관계수가 0.821로 서울근로자가구의 0.770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서울근

로자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다소 높은 것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1인당 GNP와 1인당 가정용 전력판매수입의 분기별자료(1979-1989)를 이용하여 추정된 상관계수는 0.863으로 농가가구의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도시근로자가구보다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횡단면자료에 의해 추정된 상관계수는 0.917로 나타나 시계열자료에 의한 것보다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횡단면자료(1979-1989)를 이용하여 추정한 소득계층별 소득탄력치에 의하면⁷⁾ 소득변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계층은 중류 또는 중상의 소득계층(0.8-1.0 또는 그 이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에 저소득계층이나 고소득계층(0.4-0.6)은 소득변화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전력수요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⁸⁾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농촌의 경우 소득수준과 전력요금의 상관관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도시자영업자의 상관계수는 직접 추정되지 않았으나 횡단면자료의 도시전 가구의 상관계수(0.917)와 시계열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상관계수(0.821)로부터 유추해 본다면 최소한 0.821보다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용 전력 소비는 가계가 구입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이용량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전제품은 소득계층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또한 전력요금에 대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쉽고 누락없이 전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자료의 풍부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요금은 지표의 대상으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Table III-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come and Household Electric Power Charge
소득수준과 전력소비지출의 상관계수

	Rural household utility ¹⁾	Urban household utility ¹⁾	Seoul household utility ¹⁾	Per capita electricity expenditure
Time-series				
Earnings	0.987	0.821	0.770	
Per capita GNP				0.863
Cross-section				
Earnings		0.917		

Note : 1) refers to expenditure for fuel and light.
Sources : Economic Planning Board,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3, 1990.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npublished data, 1991.
Ministry of Agriculture & Fisheries, *Annual Report on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1990,
_____, *Report on the Results of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1972, 199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1977, 1990.
The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s Yearbook*, 1986, 1990,
_____, *New National Accounts*, 1990.

7) 전력요금의 소득탄력치에 대해서는 송대희(1991), "전력요금인하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지역조합이 전력요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기로 한다. 부과대상으로의 타당성 기준은 첫째로 공평부과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둘째는 공평부과를 바탕으로 하여 재원확보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된 두가지 기준이 현실적으로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전력요금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완전대체하는 경우와 부분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완전대체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소득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비례 보험료의 부과를 완전히 전력요금에 부과하여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지는 것이다. 그 반면에 부분대체는 세무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과의 괴리가 다소 있더라도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부과하고, 세무자료가 없는 세대에 한해서 신고자료에 의하지 않고 모든 무자료세대의 전력요금에 부과하여 부과근거의 객관성은 물론 부과의 공평성을 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자료는 공식 세무자료이고 앞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의 무자료세대에 한하여 전력요금자료로 부분 대

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종합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를 신고자료세대와 무신고세대로 구분한 재산비례 및 기타자산보험료의 비중이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삼척시조합의 경우 종합소득자료 세대는 총세대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산비례보험료 구성비 44.9%, 기타자산보험료 구성비 64.8%를 각각 첨하여 결국 총보험료의 43.6%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종합소득자료 세대에게 보험료의 상당한 몫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무신고세대의 재산비례보험료의 비중이 45.6%로 신고(추정)소득 세대의 9.5%보다 훨씬 높으며 기타자산보험료의 구성비에서도 무신고(추정)세대의 비중이 21.7%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력요금의 구성비는 서로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무신고세대가 재산이나 자동차소유에서 신고소득 세대보다 부담능력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데도 소득비례 보험료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신고소득이나 조합직원의 추정에 의한 기타소득부과는 공평한 부과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종합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한 소득비례부과는 자의적인 신고소득자료 혹은 추정 소득(등급)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정도를 보다 객관

Table III-3. Amount and Distribution of Contribution by Source(Samchuck city)
소득자료유형별 보험료부과금액 구성비(삼척시조합)

	Household	Global income	Other income	Property	Other asset	Contribution	Electric rate
Total	1,327 (100)	2,164.8 (100)	1,167.8 (100)	4,691.5 (100)	521.8 (100)	18,368.5 (100)	17,516.7 (100)
Tax record	390 (29.4)	2,164.8 (100)	52.8 (4.5)	2,108.8 (44.9)	338.0 (64.8)	7,773.9 (43.6)	7,017.2 (40.1)
Reported	486 (36.6)		1,115.0 (95.5)	443.9 (9.5)	70.8 (13.6)	4,954.0 (27.0)	5,428.1 (31.0)
Unreported	451 (34.0)			2,138.8 (45.6)	113.0 (21.7)	5,640.6 (30.7)	5,071.4 (29.0)

Note : The data is as of June 1991.

Source : Samchuck Ci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npublished data, 1991.

Table III-4. Amount and Distribution of Contribution by Source(Dobong-ku)

소득자료유형별 보험료부과금액 구성비(도봉구조합)

(Unit : 1,000, Won, %)

	Household	Global income	Other income	Property	Other		Contribution	Electric rate
					property	asset		
Total	1,030 (100)	3,867.1 (100)	2,888.7 (100)	7,171.7 (100)	512.0 (100)	565.0 (100)	21,677.7 (100)	16,259.0 (100)
Tax record	253 (24.6)	3,867.1 (100)	14.2 (0.5)	3,027.5 (42.2)	29.4 (5.7)	290.0 (51.3)	8,977.2 (41.4)	5,202.2 (32.0)
Reported	763 (74.1)		2,874.5 (99.5)	4,076.7 (56.8)	470.5 (91.9)	273.0 (48.3)	12,551.7 (57.9)	10,841.3 (66.7)
Unreported	14 (1.4)			67.5 (0.9)	12.1 (2.4)	2.0 (0.4)	148.8 (0.7)	215.6 (1.3)

Note : The data is as of June 1991.

Sources : Dobong-ku Society, Computer files, 1991.

Suyoo 2-Dong Office, Data of electric power charges, 1991.

적으로 나타내는 전력요금자료를 이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新保險料賦課方式의 實證的 分析

새로운 부과방식에서의 보험료부과대상은 피보험자수, 세무자료의 종합소득,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전력요금, 토지·건물의 재산, 기타자산 등으로 하며, 특히 기타자산은 자동차 이외에도 골프회원권, 콘도 및 오피스텔 회원권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부과방법은 기본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당 정액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정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률에 의한 소수 상위층 세대의 고보험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한제를 가미하며 상한제의 단계는 조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한다.

4.1 分析資料

분석할 대상지역은 도시형의 삼척시의료보험조합, 서울 도봉구의료보험조합과 농촌형의 김제군조합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배경은 전력요금자료의 획득이 가능하면서 전수조사가 용이한 점을 고려했고, 특히 도봉구조합은 서울에 위치한 점을 감

안하였으나 대상규모가 매우 커서 수유2동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1991년 6월에 이들 조합의 전체 세대는 삼척시조합 3,637세대, 김제군의료보험조합 10,891세대로 밝혀졌으며 이들 세대에 대한 보험료부과요소별 세대 및 금액구성비는 <표 IV-1>에서 보여준 바와 같다.

먼저 삼척시조합을 살펴보면 소득비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세대는 2,820세대로 전체 세대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험료금액 구성비는 21.9%로 세대 점유율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820세대 중에서 1,869세대는 신고소득 혹은 조합측의 추정소득에 의해 부과되고, 나머지 951세대는 종합소득에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과금액이 신고(추정) 소득세대의 보험료부과금액보다 약간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소득비례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세대는 817세대나 되었다. 김제군조합의 경우를 보면 소득비례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8,143세대로 전체 세대의 74.8%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료금액은 대부분 농지소득에 부과한 것으로 총보험료의 24.4%를 나타낸다. 총세대 중에서 2,748세대는 소득비례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으며, 재산비례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9,343세대로 소득비례

Table IV-1. Number of Household and Contributions¹⁾
 보험료부과 세대 및 금액구성비(1991년 6월기준)

(Unit : 1,000, Won, %)

	Samchuck city			Kimjae county		
	Household	Amount		Household	Amount	
Total	3,637	45,510.4	100.0	10,891	123,428.1	100.0
Basic component	3,637	25,311.6	55.6	10,891	67,007.7	54.3
per household		6,546.6	14.4		16,336.5	13.2
per person		18,765.0	41.2		50,671.2	41.1
Income-related ²⁾	2,820	9,949.3	21.9	8,143	30,104.2	24.4
global income	951	5,349.7	11.8			
other income	1,927 ³⁾	4,599.6	10.1			
unreported income	817	0.0		2,748	0.0	
Property-related	1,649	8,841.9	19.4	9,343	25,485.2	20.6
Other asset ⁴⁾	604	1,407.6	3.1	993	831.0	0.7

Notes : 1) Dobong-ku society is excluded because of using a part of the whole household

2) Income-related component of Kimjae county consists of global income and farm-land income.

3) 58 out of 1,927 households have global income.

4) implies automobile in Samchuck city, and livestock in Kimjae county.

The data is as of June 1991.

Sources : Samchuck Ci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Kimjae Coun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세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기본보험료의 비중은 두조합이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그 비중이 비교적 높은 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분석대상조합의 1991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부과명단과 전력요금 고지명단이 일치하는 세대를 추출하였다.⁹⁾ 먼저 삼척시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 부과파일에서 파악된 3,637세대 중에서 전기요금고지명단과 일치하는 세대는 1,327세대로 드러났다. 삼척시조합 1,327세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조합 수유2동 1,030세대 그리고 김제군조합 7,959세대에 대한 보험료부과 요소별 세대수 및 금액구성비는 <표 IV-2>와 같다. 삼척시조합의 표본 1,327세대의 부과요소별 금액구성비를 모집단 3,637세대와 비교해 보면, 종합소득보험료의 비중은 모집단과 표본집단에서 각각 11.8%로 동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신고(추정)소득세대의 기타소득 보험료비중이 모집단의 10.1%에서 표본집단의 6.4%로 낮아진 반면 재산비례 보험료의 비중은 모집단의 19.4%에서 25.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조합의 경우 모집단과의 비교는 자료관계상 할 수 없으나 삼척시 조합과 비교해 보면 기본보험료의 비중이 낮은 반면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의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군조합은 표본집단의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의 비중이 모집단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그러한 차이는 무시할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본집단의 자료특성이 모집단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표본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하여도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8)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이 종합소득자료, 자동차소유 등 기타자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여기서 제외된 세대는 자격변동이나 보험료세대주와 전력요금 고지명단의 이름이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다.

Table IV-2. Household and Amount by Source of Contribution
 보험료부과 요소별 세대 및 금액(1991년 6월기준)

(Unit : 1,000, Won, %)

	Samchuck city		Dobong-ku		Kimjae county	
	Household	Amount	Household	Amount	Household	Amount
Total	1,327	18,368.5(100)	1,030	21,677.7(100)	7,959	95,440.7(100)
Basic component	1,327	9,822.6(53.5)	1,030	6,673.2(30.8)	7,959	49,274.1(51.6)
per household		2,388.6(13.0)		1,854.0(8.6)		11,938.5(12.5)
per person		7,434.0(40.5)		4,819.2(22.3)		37,335.6(39.1)
Income-related	876	3,332.6(18.1)	1,020	6,755.8(31.2)	7,148	24,540.1(25.7)
global income	390	2,164.8(11.8)	253	3,867.1(17.8)	656	3,067.9(3.2)
farm-land	0		1	2.8	6,492	21,472.2(22.5)
other income	503 ¹⁾	1,167.8(6.4)	767 ²⁾	2,885.9(13.3)	0	
without income	451	0.0	14	0.0	1,235	0.0
Property-related	880	4,691.5(25.5)	622	7,171.7(33.1)	7,959	21,575.5(22.6)
Other property ³⁾	0		155	512.0(2.4)	0	
Other asset	232	521.8(2.8)	244	565.0(2.6)	64	51.0(0.1)

Notes : 1) includes 17 households with global income.

2) includes 5 households with global income.

3) implies security deposit of the rented house.

The data is as of June 1991.

Sources : Samchuck Ci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Dobong-ku Society, Computer files, 1991.

Kimjae Coun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Table IV-3. Comparison of Contributions Imposing on Global Income(Samchuck city)
 종합소득비례 보험료의 비교(삼척시조합)

(Unit : Won)

	Lump-sum by grade(A)	Lump-sum per household(B)	Current Method (A+B)	Flat rate ¹⁾
Total(1,000 won)	2,164.8	702.0	2,866.8	3,006.9
1 grade	1,000	1,800	2,800	973
5 "	3,300	1,800	5,100	4,351
8 "	5,000	1,800	6,800	6,747
10 "	6,000	1,800	7,800	8,421
15 "	8,800	1,800	10,600	12,411
20 "	11,700	1,800	12,500	16,160
25 "	17,400	1,800	19,200	24,853
30 "	26,700	1,800	28,500	30,800
31(401-500)		1,800	28,500	35,000(2 households)
32(501-999)		1,800	28,500	40,000(6 ")
33(1,000-1,999)		1,800	28,500	45,000(0 ")
34(2,000 이상)		1,800	28,500	50,000(1 ")

Note : 1) Global income is multiplied by 0.8%.

() refers to amount of income in terms of 10,000 won.

4.2 賦課方法

분석대상 지역조합에 보험료를 부과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정액부과를 지양하고 위험비례(가족수)에만 부과한다. 삼척시조합은 현행 가족수 1인당 1,500원을 부과하고, 도봉구조합 수유2동 1,030세대의 경우 세대당 1,800원을 피보험자당으로 환산하여 피보험자당 1,700원을 부과한다. 왜냐하면 현재 기본보험료의 비중이 30.8%로 다른 조합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비례보험료는 세무자료의 종합소득금액에 정률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상한을 설정하여 정액부과를 가미한다. 삼척시조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월 400만원 이하까지는 0.8%의 정률을 부과하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상한을 설정하여 4단계의 정액부과를 가미한다. 도봉구조합의 경우 종합소득은 월 1,000만원 이하는 0.32%의 정률을 부과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금액 상한을 설정하여 3단계의 정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산

출된 보험료수준과 현행 보험료와의 비교는 <표 IV-3>과 <표 IV-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셋째, 소득의 세무자료가 전혀 없는 세대에게는 생활정도를 나타내는 전력요금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부과방식은 기타소득에 의한 보험료에다 세대당 정액부과액을 더한 보험료수입액이 전력요금에 부과하는 금액과 일치하게 하는 정률이 산출된다. 삼척시의료보험조합의 경우 표본 1,327세대 중에서 소득자료가 없는 937세대에 대해 전력요금에 27.2%의 정률로 부과하며 여기에도 세대당 1,800원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도봉구의료보험조합의 경우 기타소득세대, 농지소득세대, 무자료세대에 해당하는 777세대의 전력요금에 38.8%의 정률로 부과한다. 삼척시의료보험조합의 무자료 937세대, 도봉구조합의 1,030세대의 현행 소득비례 보험료부과에 관한 정보는 <표 IV-5>와 같다.

Table IV-4. Comparison of Contributions Imposing on Global Income(Dobongku society)

종합소득비례 보험료의 비교(도봉구조합)

	(Unit : Won)	
	Lump-sum	Flat rate ¹⁾
Total amount(1,000 won)	3,867.1	4,083.3
1 grade	1,000	1,074
5 "	2,800	2,744
10 "	4,400	4,309
15 "	7,500	7,301
20 "	12,600	12,620
25 "	21,800	21,676
29 "	30,000	30,647
30(10,001-20,000)	31,100	34,000(28 households)
31(20,001-30,000)	31,100	37,000(17 ")
32(30,001 over)	31,100	42,000(4 ")

주 : 1) Global income is multiplied by 0.32%.

() refers to amount of income in terms of 10,000 won.

전력요금에 부과될 세대에 대한 보험료 크기별 세대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조합은 5,000원초과 30,000원이하의 세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득변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세대분포이다. 반면 농촌의 김제군조합은 5,000원이하의 세대가 45%, 5,000원에서 10,000원이하의 세대가 36.3%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지역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삼척시조합의 경우 기타소득보험료를 내는 486세대의 전력요금분포를 살펴보면 기타소득보험료를 내지 않은 451세대의 전력분포와 서로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451세대는 전력요금의 크기에 따른 생활수준이 481세대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소득비례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자료세대의 전력요금을 살펴보면 신고의 기타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이 전혀 없는 세대가 전력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타소득이 높으면서 전력요금이 낮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

Table IV-5. Income-related Contributions and Electric Rates of Income Tax Waivers
 무자료세대의 소득비례보험료 및 전력요금 현황(1991년 6월 기준)

(Unit : 1,000 won, %)

	Households	Contributions(A)	Electric rates(B)	Ratio(A / B)
Samchuck city				
Income	937(100.0)	2,854.4 ¹⁾	10,499.555	27.186 %
reported	486(51.9)	2,042.6 ¹⁾	5,428.116	
unreported	451(48.1)	811.8 ¹⁾	5,071.439	
Dobong-ku				
Income	777(100.0)	2,888.7	11,056.829	38.775 %
farm-land	1	2.8		
reported	763(51.9)	2,871.7	10,841.259	
unreported	14(48.1)	0.0	215.570	

Note : 1) contains 1,800 won per household.

Sources : Samchuck Ci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Dobong-ku Society, Computer files, 1991.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npublished data, 1991.

Table IV-6. Distribution of Household by Size of Electric Charge(as of June 1991)
 전력요금 크기별 세대구성비(1991년 6월 기준)

(Unit : 1,000 won, %)

	Samchuck city			Dobong-ku	Kimjae county
	937 households	486 households	451 households	777 households	7,090 households
5 less	27.9(261)	29.2	26.4	10.2(79)	45.0(3,194)
5-10	35.3(331)	36.4	34.1	29.7(231)	36.3(2,577)
10-20	26.0(244)	24.1	28.2	41.6(323)	15.0(1,060)
20-30	6.8(64)	5.6	6.9	10.8(84)	2.3(162)
30-40	3.6(34)	1.9	1.8	4.8(37)	0.9(62)
40-50	1.2(11)	1.2	0.9	1.5(12)	0.2(17)
50-60	0.5(5)	0.2	0.2	0.6(5)	0.0(4)
60-70	0.2(2)	0.4	0.4	0.5(4)	0.0(2)
80-90	0.4(4)	-	0.6	0.3(2)	
90-100	0.3(3)	0.2	-		0.0(3)
100 over	0.6(6)	-	0.4		0.1(7)

Note : Numbers of household appears in the parentheses.

다. 여기서 두가지 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소득을 낮게 신고했거나 혹은 소득이 없으면서 전력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물론 사업장과 주거가 동일한 경우나 또는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력요금도 다른 경우보다 많을 수 있다. 다음은

기타소득금액이 높은 세대 중에서 전력요금도 낮은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개별적 자료분석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넷째,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가액에 정률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상한을 설정하여 정액부과를 가미한

Table IV-7. Comparison of Property-related Contributions(Samchuck city)

재산비례보험료의 비교(삼척시조합)

(Unit : Won)

	Lump-sum	Flat rate ¹⁾
Total(1,000 won)	4,691.5	5,051.6
1 grade	1,000	0
2 "	1,500	1,568
5 "	2,100	2,085
10 "	3,200	3,263
15 "	4,800	5,099
20 "	7,500	8,036
25 "	11,100	12,408
30 "	16,900	19,545
31(2,001-4,999)		20,000(36 households)
32(5,001-9,999)		22,000(16 ")
33(10,000 over)		25,000(11 ")

Note : 1) The official value of property is multiplied by 0.1%.

() refers to the official value of property in terms of 10,000 won.

다. 삼척시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까지는 0.1%의 정률을 부과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단계의 정액을 부과하며, 단 150만원 미만의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한다. 도봉구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전·월세금액을 포함하여 재산가액 5,000만원 이하는 0.05%의 정률을 부과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면 3단계의 정액을 부과토록 한다. 이 방식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수준과 현행방식의 비교는 <표 IV-7> 그리고 <표 IV-8>와 같다.

다섯째, 기타자산으로 자가용 자동차 이외에도 골프회원권 콘도 및 오피스텔 회원권 등도 포함하여 부과되 여기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현행대로 자동차에만 부과한 자료를 사용했다.

4.3 分析結果

<표 IV-9>에서 부과요소별 보험료구성비를 살펴

Table IV-8. Comparison of Property-related Contributions(Dobong-ku)

재산비례보험료의 비교(도봉구조합)

(Unit : Won)

	Lump-sum	Flat rate ¹⁾
Total(1,000 won)	7,683.7	6,943.1
1 grade	900	572
2 "	1,500	1,052
5 "	2,100	1,485
10 "	3,700	2,482
15 "	6,300	4,262
20 "	10,100	7,191
25 "	14,800	12,348
30 "	20,000	22,475
31(50,001-100,000)		27,000(46 households)
32(100,001-200,000)		30,000(16 ")
33(200,001 over)		35,000(6 ")

Note : 1) The official value of property is multiplied by 0.05%.

() refers to the official value of property in terms of 10,000 won.

보면 삼척시조합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소득비례보험료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무자료세대에 대해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전액요금을 부과대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보험료의 비중이 총보험료의 1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현행방식의 11.8%에 세대당 정액을 포함하면 15.6% 수준이어서 거의 비슷하다. 기타소득세대의 보험료비중은 현행방식의 11.1%(세대당 1,800원을 포함)에서 7.8%로 감소한 반면 무자료세대의 비중이 현행의 0.4%에서 7.3%로 증가한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해야 할 현행방식의 문제점은 소득세무자료가 없는 937세대 중에서 486세대가 소득비례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451세대에 비해 생활수준(전력소비)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데도 기타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정액을 전액요금부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

Table IV-9. Amount and Distribution by Source of Contributions(Samchuck city)
보험료부과 요소별 금액구성비(삼척시 조합)

	(Unit : 1,000 Won, %)		
	Household	Current method	New method
Contribution	1,327	18,368.5(100.0)	18,870.2(100.0)
Basic component	1,327	9,822.6(53.5)	7,434.0(39.4)
per person		7,434.0(40.5)	7,434.0
per household		2,388.6(13.0)	0.0
Income-related ¹⁾	1,237	3,332.6(18.1)	5,862.8(31.1)
global income	390	2,164.8(11.8)	3,006.9(15.9)
electric charge	937	0.0	2,855.9(15.1)
reported income ²⁾	486	1,167.8(6.4)	1,476.5(7.8)
unreported ²⁾	451	0.0	1,379.4(7.3)
Property-related	880	4,691.5(25.5)	5,051.6(26.8)
Other asset	232	521.8(2.8)	521.8(2.8)

Notes : 1) Income-related component includes 1,800 won per household under the new method.

2) Voluntarily reported and unreported incomes are substituted for electric power charge under the new method.

본 보험료의 비중을 53.5%에서 39.4%로 낮추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전력요금에 새로운 부과항목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과항목을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게 수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봉구의료보험조합의 경우는 표본 1,030세대 중에서 소득비례보험료를 내지 않은 세대가 적고 기본보험료의 비중이 비교적 낮다. 따라서 신부과방식에 의한 보험료부과 요소별 구성비가 현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부과방식의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등급별 정액부과를 정률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서 나타나는 보험료 부과에 공평성을 높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신부과방식에 의해 산출된 세대당 보험료의 크기별 세대분포를 살펴보면 <표 IV-11>과 <표 IV-12>에서 보여준 바와 같다. 현행 부과방식과 비교해 보

Table IV-10. Amount and Distribution of Contributions(Dobong-ku)
보험료부과 요소별 금액구성비(도봉 구조합)

	(Unit : 1,000 Won, %)		
	Household	Current method	New method
Contribution	1,030	21,677.7(100.0)	21,304.5(100.0)
Basic component	1,030	6,673.2(30.8)	6,827.2(32.0)
per person		4,819.2(22.2)	6,827.2
per household		1,854.0(8.6)	0.0
Income-related	1,030	6,755.8(31.2)	6,969.2(32.3)
global income	253	3,867.1(17.8)	4,083.3(19.2)
Electric charge	777	0.0	2,885.9(13.5)
reported income	763	2,874.5(13.3)	2,829.6(13.3)
unreported	14	0.0	56.3(0.3)
Property-related	777	7,683.7(35.4)	6,943.1(33.0)
Other asset	244	565.0(2.6)	565.0(2.7)

Notes : 1) Income-related component includes 1,800 won per household under the new method.

2) Voluntarily reported and unreported incomes are substituted for electric power charge under the new method.

Table IV-11. Household Distribution by Size of Contribution(Samchuck city)
보험료 크기별 세대구성비(삼척시 조합)

Contribution bracket	(Unit : Won)			
	Current method		New method	
	Household	Distribution	Household	Distribution
Total	1,327	100.0	1,327	100.0
10,000 less	455	34.3	532	40.1
10,001-20,000	673	50.7	560	42.2
20,001-30,000	138	10.4	134	10.1
30,001-40,000	39	2.9	63	4.7
40,001-50,000	12	0.9	20	1.5
50,001-60,000	10	0.8	5	0.4
60,001-70,000			8	0.6
70,001-80,000			3	0.2
80,001-90,000			2	0.2

면 먼저 삼척시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신방식에서 10,000원 이하와 30,000원을 초과하는 세대구성비가 더

Table IV-12. Household Distribution by Size of Contribution(Dobong-ku)

보험료 크기별 세대구성비(도봉구조합)
(Unit : Won)

Contribution bracket	Current method		New method	
	Household	Distribution	Household	Distribution
Total	1,030	100.0	1,030	100.0
10,000 less	187	18.2	214	20.8
10,001-20,000	397	38.5	456	44.3
20,001-30,000	256	24.9	176	17.1
30,001-40,000	99	9.6	70	6.8
40,001-50,000	41	4.0	51	5.0
50,001-60,000	34	3.3	28	2.7
60,001-70,000	16	1.6	16	1.6
70,001-80,000			16	1.6
80,001-90,000			3	0.3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방식이 현행방식보다는 더 공평한 부과방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수 몇세대는 월 60,000원에서 90,000원까지 내게 됨으로써 몇세대의 보험료저항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자료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상한제의 단계별 정액금액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도봉구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크기별 세대분포를 살펴보면 월 20,000원 이하의 부담세대는 현행방식의 56.7%에서 신방식의 65.1%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0원초과 40,000원이하의 세대는 약간 줄어들고, 40,000원에서 50,000원이하의 세대는 약간 늘어나 부담의 공평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방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현행 보험료수준보다 덜 부담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할 세대도 있는 것이다. 더 부담하거나 혹은 덜 부담하는 세대에 대한 자료는 <표 IV-13>과 <표 IV-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삼척시조합의

Table IV-13. Comparison of Household Burden Ratio(Samchuck city)

부과보험료의 차감비율(삼척시조합)
(Unit : %)

Burden Ratio	More Burden(+)		Less Burden(-)	
	Household	Distribution	Household	Distribution
110 over	15	1.1		
100 below	4	0.3		
90	5	0.4		
80	6	0.5	5	0.4
70	6	0.5	13	1.0
60	10	0.8	39	2.9
50	23	1.7	46	3.5
40	31	2.3	75	5.7
30	67	5.0	111	8.4
20	154	11.6	156	11.8
10	281	21.2	280	21.1
Sum ¹⁾	602	45.4	725	54.6

Note : 1) refers to a cumulative summation.

Table IV-14. Comparison of Household Burden Ratio(Dobong-ku)

부과보험료의 차감비율(도봉구조합)
(Unit : %)

Burden Ratio	More Burden(+)		Less Burden(-)	
	Household	Distribution	Household	Distribution
110 over	9	0.9		
100 below	2	0.2		
90	3	0.3		
80	4	0.4		
70	7	0.7	1	0.1
60	6	0.6	4	0.4
50	7	0.7	14	1.4
40	22	2.1	58	5.6
30	51	5.0	137	13.3
20	96	9.3	231	22.4
10	129	12.5	249	24.2
Sum ¹⁾	336	33.6	694	67.4

Note : 1) refers to a cumulative summation.

경우 1,327세대 중에서 월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부담해야 할 세대는 602세대이고, 덜 부담할 세대는 전체의 54.6%인 725세대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더

부담해야 할 세대에서 보험료차이가 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첫째는 신고소득이 낮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무자료세대들이 높은 전력 소비량으로 전력요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종합소득금액이나 재산가액 등이 최고상한에 속해 정액부과가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현행 보험료수준보다 덜 부담하게 되는 세대가 있는데 그런 요인중에는 신고된 기타소득이 높은 반면에 전력요금이 낮은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재산 1등급에 속한 세대중 재산보험료가 0인 동시에 정률에 의한 종합소득비례 보험료가 낮은 경우도 있다.

도봉구의료보험조합의 경우도 신부과방식에 의해 덜 부담해야 할 세대는 694세대로 표본 1,030세대의 67.4%를 점하고 있다. 더 부담해야 할 336세대 중

에서 129세대는 현행 보험료의 10%의 범위 안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수용된다고 본다면 총세대의 20%에 해당하는 세대가 신방식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대수라고 볼 수 있다.

소득자료에서 농촌의 군조합은 시조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부과방안을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세대당 정액을 지양하고 피보험자당 정액을 부과한다. 둘째, 종합소득이나 면세점이상의 농지소득에만 정률의 소득비례보험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면세점미만의 농지소득에는 소득비례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면세점미만의 농지는 영세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산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2중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재산가액에 정률로 재산비례보험료를 부과한다. 현행 부과대상

Table IV-15. Amount and Ratio of Contributions(Kimjae county)
보험료부과 자료의 현황(김제군조합)

(Unit : 1,000 won)

	No. of household	Contribution (A)	Lump-sum per household(B)	A+B=C	Amount(D)	Ratio (C/D)
Total	7,959	95,440.7				
Basic component		49,274.1				
Income-related	1,249	8,799.5	874.3	16,849.6	3,755,980	0.258%
global income	656	3,067.9	459.2	3,527.1	995,990	0.354%
farm-land ¹⁾	637	5,731.6	415.1	6,146.7	2,759,990	0.223%
	(44)	(421.2)				
Electric rate	6,710	15,791.6	4,697.0	20,488.6	51,083.66	40.11%
tax waiver ²⁾	5,855	15,740.6			40,849.63	
	(380)	(970.3)			(3,853.443)	
other asset	1,235	51.0			10,234.030	
Property(I)	7,959	21,575.5			21,413.100	0.0298%
Property(II)		21,575.5 (20,488.6 ³⁾)		42,064.1	72,427,858	0.0581%

Notes : 1) implies farm-land income over the tax exemption limit, and () refers to number and contribution of household with global income.

2) refers to farm-land income below the tax exemption limit, and () implies number and contribution of household with global income.

3) corresponds to the amount imposit on electric power rates.

The data is as of June 1991.

Sources : Kimjae County Society, Computer files, 1991.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npublished data, 1991.

에서 제외된 면세점 미만의 농지소득과 기타자산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력 요금에 부과하는 방법(I)과 또는 그것을 전력요금대신에 재산비례 보험료에 포함하여 정률로 재산에만 부과하는 방법(II) 등이 있다. 이 경우 두 방법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제군조합에 적용하는 구체적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정액부과를 지양하고 현재 피보험자당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한다. 둘째, 소득비례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이 월 400만원이하는 0.45%의 정률로 부과하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

Table IV-16. Comparison of Global Income-related Contribution(Kimjae county)
종합소득비례 보험료의 비교(김제군조합)

	Lump-sum by grade(A)	Lump-sum per household(B)	A+B=C	Flat rate ¹⁾
Total(1,000 won)	3,067.9	459.2	3,527.1	3,626.3
1 grade	800	700	1,500	668
5 "	2,600	700	3,300	2,898
10 "	4,600	700	5,300	5,226
15 "	6,500	700	7,200	7,405
20 "	8,500	700	9,200	9,675
25 "	10,700	700	11,400	12,141
30(4,010-7,000)	16,400	700	17,100	20,000(29 households)
31(7,010-12,000)				23,000(25 ")
31(12,010 over)				27,000(6 ")

Note : 1) Global income is multiplied by 0.45%.

() refers to amount of global income in terms of 10,000 won.

Table IV-17. Comparison of Income-related Contribution(Kimjae county)
농지소득비례 보험료의 비교(김제군조합)

	Lump-sum by grade(A)	Lump-sum per household(B)	A+B=C	Flat rate ¹⁾
Total(1,000 won)	5,310.4	415.1	5,725.5	6,777.7
23 grade	6,600	700	7,300	7,876
24 "	7,400	700	8,100	8,512
25 "	8,300	700	9,000	9,418
26 "	9,100	700	9,800	10,499
27 "	10,100	700	10,800	11,519
28 "	11,100	700	11,800	12,761
29 "	12,200	700	13,000	14,032
30(6,010-8,000)	13,000	700	13,700	17,000(39 households)
31(8,010-11,000)				20,000(9 ")
32(11,010 over)				24,000(7 ")

Note : 1) Farm-land income over the tax exemption limit is multiplied by 0.25%.

() implies amount of farm-land income in terms of 10,000 won.

All data is as of June 1991.

Table IV-18. Comparison of Property-related Contributions(Kimjae county)
 재산비례보험료의 비교(김제군조합)

(Unit : won)

	Lump-sum	Flat rate(I)	Flat rate(II)
Total(1,000 won)	21,575.5	21,413.1	42,258.3
1 grade	600	321	641
5 "	1,100	1,083	2,167
10 "	1,800	1,755	3,509
15 "	2,900	2,870	5,741
20 "	4,700	4,707	9,415
25 "	7,700	7,692	9,415
30(4001-50 million won)	11,500	13,284	25,000(37 households)
31(5,001-100 million won)		18,000	27,000(40 ")
32(100 million won over)		20,000	30,000(15 ")

Note : The data is as of June 1991.

(I) The official value of property is multiplied by 0.03%.

(II) The official value of property is multiplied by 0.06%.

상한을 설정하여 3단계의 정액을 부과한다. 농지소득의 경우는 면세점이상의 농지소득금액이 600만원 이하는 0.25%의 정률로 부과하고 월 6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소득상한을 설정하여 3단계의 정액부과를 가미한다. 셋째, 재산비례보험료는 두가지 정률이 산출되는데 I안의 경우 재산가액이 5,000만원이하 는 0.03%의 정률을 부과하고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2단계의 상한을 설정하여 정액을 부과하며, 전력요금에 적용하는 정률은 40.2%이다. 넷째, II안은 전력요금 대신에 그 부분을 재산에 부과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재산가액이 4,000만원까지는 0.06%의 정률로 부과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3단계의 상한을 설정하여 정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신부과방식의 부과대상별 금액과 현행 방식간의 비교는 <표 IV-16>에서 <표 IV-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19>에서 부과요소별 보험료구성비를 살펴 보면 김제군조합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비중이 현행 51.6%에서 45.3%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소득비례 보험료의 비중은 방식 I에 의하면 32.3%로 크게 증가하나 방식 II에 의하면 10.8%로 낮아지고

그 대신에 재산비례보험의 비중이 43.9%로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된 것은 무자료세대에 면세점미만의 농지소득보험료와 기타자산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방식중 어느 방식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고 보며, 다만 농지에만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영세농지의 이중부과를 지양하고 부과체계의 단순화를 기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제군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크기별 세대분포를 살펴보면 월 10,000원 이하의 부담세대는 현행 방식의 43.7%에서 신방식의 44.6%(방식 I), 49.1%(방식II)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0,000원초과 30,000원이하의 세대는 약간 줄어들고, 30,000원 초과의 세대는 약간 늘어나 부담의 공평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수 몇 세대는 월 50,000원에서 90,000원까지 내게 됨으로써 몇 세대의 보험료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방식에 의한 보험료수입이 현행 수준보다 더 많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인자료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험료를 완화할 수 있다고

Table IV-19: Amount and Distribution by source of Contributions(Kimjae county)

보험료부와 요소별 금액구성비(김제군조합)

(Unit : 1,000 won, %)

	Household	Current method	New method(I)	New method(II)
Contributions	7,959	95,440.1(100)	95,910.9(100)	96,220.4(100)
Basic component ¹⁾		49,274.1(51.6)	43,558.2(45.4)	43,558.2(45.3)
per person		37,335.6(39.1)	43,558.2	43,558.2
per household		11,938.5(12.5)	0.0	0.0
Income-related ²⁾	1,249	24,540.1(25.7)	30,939.6(32.3)	10,404.0(10.8)
global income	656	3,067.9(2.7)	3,626.3(3.8)	3,626.3(3.8)
farm-land	637	5,731.6(7.4)	6,777.7(7.1)	6,777.7(7.0)
Electric rate ³⁾	6,710	15,791.6{4,697}	20,535.6(21.4)	0.0
tax waiver	5,855	15,740.6{3,832.5}	16,421.6	0.0
Other assets	1,235	51.0{864.5}	4,114.1	0.0
Property-related	7,959	21,575.5(22.6)	21,413.1(22.3)	42,258.3(43.9)

Notes : 1) Basic component under the new method(I & II) is calculated by 1,400 won per the insured person.

2) Income-related contributions include 700 won per household under the new method(I & II).

3) Contribution based on electric power rates corresponds to the amount imposing on income tax waivers and other assets under the current method.

{ } includes the amount of numbers of household multiplied by 700 won.

The data is as of June 1991.

Table IV-20: Household Distribution by Size of Contribution(Kimjae county)

보험료 크기별 세대구성비(김제군조합)

(Unit : won, %)

Contribution bracket	Current method		New method(I)		New method(II)	
	Household	Composition	Household	Composition	Household	Composition
Total	7,959	100.0	7,959	100.0	7,959	100.0
10,000 less	3,480	43.7	3,552	44.6	3,905	49.1
10,001 - 20,000	3,721	46.8	3,553	44.6	3,096	38.9
20,001 - 30,000	655	8.2	643	8.1	543	6.8
30,001 - 40,000	92	1.1	154	1.9	278	3.5
40,001 - 50,000	11	0.2	32	0.4	100	1.3
50,001 - 60,000			13	0.2	20	0.3
60,001 - 70,000			8	0.1	13	0.1
70,001 - 80,000			1	0.0	4	0.0
80,001 - 90,000			1			
90,001 - 100,000			1			
100,000 over			1			

본다.

김제군의료보험조합의 경우도 신부과방식(I)에 의해 덜 부담해야 할 세대는 4,420세대로 표본 7,959

세대의 55.5%를 점하고 있다. 더 부담해야 할 3,539

세대 중에서 1,484세대는 현행 보험료의 10%의 범위 안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수용된다고

Table IV-21. Comparison of Household Burden Ratio in New Method(I), Kimjae county

부과방식(I) 보험료의 차감비율(김제군조합)

(Unit : %)

Burden ratio	More Burden(+)		Less Burden(-)	
	Household	Distribution	Household	Distribution
110 over	128	1.6		
100 under	41	0.5		
90	45	0.6		
80	58	0.7		
70	51	0.6	7	0.1
60	107	1.3	36	0.5
50	203	2.6	160	2.0
40	268	3.4	444	5.6
30	431	5.4	985	12.4
20	723	9.1	1,362	17.1
10	1,484	18.6	1,426	17.9
Sum ¹⁾	3,539	44.5	4,420	55.5

Note : 1) refers to a cumulative summation.

Table IV-22. Comparison of Household Burden Ratio in New Method(II), Kimjae county

부과방식(II) 보험료의 차감비율(김제군조합)

(Unit : %)

	More Burden(+)		Less Burden(-)	
	Household	Distribution	Household	Distribution
110 over	2	0.0		
100 under	2	0.0		
90	7	0.1	2	0.0
80	10	0.1	14	0.2
70	27	0.3	69	0.9
60	51	0.6	206	2.6
50	148	1.9	268	3.4
40	353	4.4	420	5.3
30	302	3.8	833	10.5
20	516	6.5	1,617	20.3
10	1,172	14.7	1,940	24.4
Sum ¹⁾	2,590	32.5	5,369	67.5

Note : 1) refers to a cumulative summation.

본다면 총세대의 약 25%에 해당하는 세대가 신방식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대수이다. 한편 신방식(II)에 의하면 덜 부담해야 할 세대는 5,369세대, 현행 보험료의 10% 범위내의 더 부담할 1,172세대가 신방식(II)을 수용한다면 총세대의 17.8%만이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방식의 보험료수입이 현행방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개인세대별 자료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보험료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V. 結言 및 政策建議

지역의료보험의 중요한 문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적용대상자들이 주로 농어민, 자영상공인,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서 이들의 소득과악이 본래 어렵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이다. 제 2장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사실은 부과방법이 너무 복잡하여 보험료산정의 공평성에 대한 불만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부과체계의 단순화를 통해서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성실하게 신고하던 혹은 신고를 하지 않던 간에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산출이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취지하에서 전력요금자료의 활용도,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의 정률부과 등에 관하여 논리적·실증적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험료분석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세대당 정액부과를 지양하고 피보험자당 정액 부과로 단일화한다. 둘째, 소득에 관한 세무자료가 있는 세대는 종합소득자료를 현행대로 이용하고, 세무자료가 없는 세대에 한해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신고소득 및 추정소득자료를 사용하는 대신에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전력요금자료를 활용한다. 전력요

금자료의 활용도는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조합에 더 적합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능력비례보험료는 등급별 정액부과 대신에 정률방식으로 전환하면 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과에 관련된 조합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 소득금액이나 재산가액의 상한은 조합마다 신중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보험료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이외에 고소득자를 반영하는 골프회원권, 콘도 및 오피스텔 회원권 등도 부과대상으로 확대한다.

앞에서 분석대상 지역이 3개지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함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제시

된 부과방안을 지역조합의 재량에 따라 몇개 지역을 실험대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보험료 부과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수춘 외,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지역의료보험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노인철 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정창영, 경제학원론, 세경사, 1989.
- 송대회, “전력요금인하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1.
- 한달선,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방법”, 의료보험, 의료보험연합회, 1988.

<Summary>

A Reconstruction of the Method of Financing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Program

InChul Noh*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contribution be based on two components :

1. a basic component determined by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per household
2. income-related component determined by income and wealth(land, house, automobile, etc.).

Since tax records of the self-employed including farmers are limited and poor, insurance organizations have been using voluntarily reported data and / or arbitrarily estimated incomes. Thus, inability to assess income accurately remains a major obstacle to achieving equitable financing and makes satisfactory progress difficult where the insurance societies require sizable insurance contributions.

The current method can be characterized as a lump-sum calculation. That is, the level of contribu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grade in which a household belongs. The grade is classified by the amount of income and wealth. The lump-sum method by grade is generally criticized as both a regressive contribution and a time-con-

suming calculation.

The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current financing method and whether or not those problems are critical. It also analyzes both the empirical consequences of a flat rate method on the amount of income and wealt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hold utility fee and the contribution based on voluntarily reported and / or estimated income.

To simplify the method and to make financing more equitable the following modified financing method is suggested.

First, a lump-sum amount per household can be excluded from the basic component, which is meaningless. Secondly, a flat rate method with a ceiling should be applied to the income-related component to make contributions more equitable and also reduce the amount of time-consuming calculation. Thirdly, the household utility fees could be used as a proxy index reflecting the living standard, instead of using voluntarily reported incomes.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